

의안번호	2208006
의 퇴 인	이종배의원
회 답 일	2025.3.13.
추계번호	25D0719
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제3조의2 (수당등의 지급)	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제3조의2 (수당등의 지급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,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수당, 여비 등 필요한 경비(이하 “수당등”이라 함)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 - 현재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원 개인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없으나,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 참석 시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
-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,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이 있으며, 지역 단위 조직의 경우 18개 시도지부, 228개 시군구지회, 3,500개 읍면동분회로 구성되어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수당등의 종류 및 금액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나, 수당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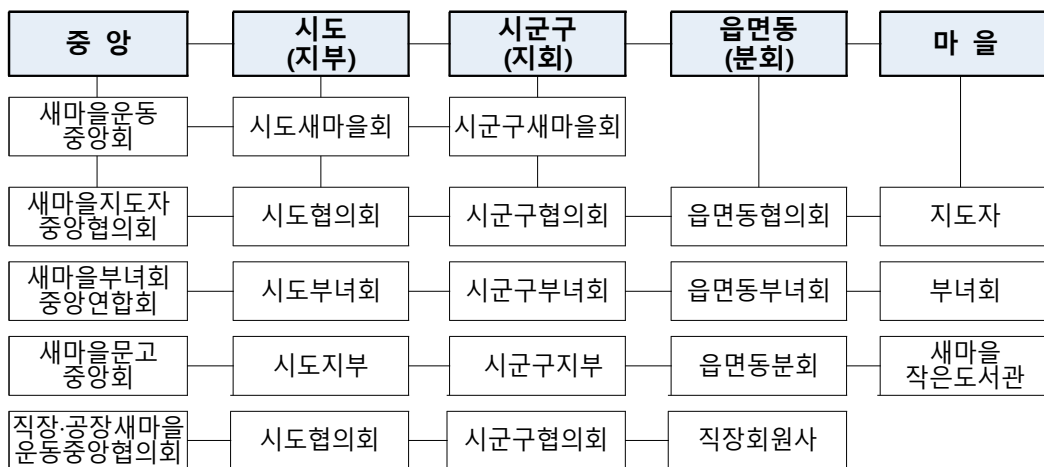
[참고자료] 새마을운동중앙회 현황

□ 조직 현황

구분	새마을운동중앙회
연혁	▪ 새마을가꾸기운동 제창 ('70.4.22) ▪ (사)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설립('80.12.1) ▪ 새마을운동중앙회로 명칭 변경('00.4.19) ▪ 「새마을의 날」 국가기념일 제정('11.3.8) ▪ 「새마을운동 기록물」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('13.6.18)
근거 법률	▪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/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('80.12.13 제정)
회원	▪ 180만여 명
주요 사업	▪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 - 돌봄 사각지대 해소, 세대·지역·도농 간 교류협력 확대, 재난·재해 예방활동 등 ▪ 탄소중립 실천·연대강화 - 친환경생활 실천, 자원재활용 활성화, 자연·생태 보호·관리 등 ▪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 - 현지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, 외국인 새마을교육, 거점국가 시범운영 등 ▪ 새마을운동 추진 역량강화 - 새마을회원 확충, 청년층 참여 확대와 해외 봉사단 운영 등

자료: 행정안전부

□ 조직도



자료: 행정안전부